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홍석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3412

발의연월일 : 2021. 11. 18.

발 의 자 : 홍석준 · 지성호 · 김용판

추경호 · 김석기 · 조명희

김성원 · 이종배 · 이 용

이양수 · 윤창현 의원

(11일)

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

지방자치단체는 자가통신망을 구축하여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으며, 국민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와이파이 사업도 추진하고 있음.

하지만 현행법은 자가통신망의 목적외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, 지 방자치단체는 기간통신사업의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공 와이파이 등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통신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상황임.

이에 공공와이파이 사업, 행정 목적의 사물인터넷(IoT) 사업 등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에 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간통신사업을 허용하여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저소득층의 통신격차를 해소하고자 함(안 제7조제2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등록 기준 및 절차는 제6조제1항을 준용하되, 같은 항제1호에 따른 재정 능력은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조달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.
- 1. 공공와이파이 사업
- 2. 행정 목적의 사물인터넷 사업
- 3.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제7조(등록의 결격사유) (생 략) | 제7조(등록의 결격사유) ① (현행 |
| |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 |
| <u><신 설></u> |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|
| |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의 |
| | 비영리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 |
| |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|
| | 을 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 |
| | 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 |
| | 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다. 이 |
| | 경우 등록 기준 및 절차는 제6 |
| | 조제1항을 준용하되, 같은 항 |
| | 제1호에 따른 재정 능력은 해 |
| | 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 |
| | 의 조달 계획으로 갈음할 수 |
| | 있다. |
| | 1. 공공와이파이 사업 |
| | 2. 행정 목적의 사물인터넷 사 |
| | <u>업</u> |
| | 3.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장 |
| |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|